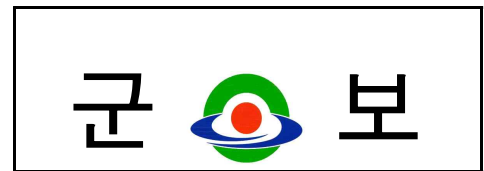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63호 2022. 4. 25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663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25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-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지원 종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식권 보장*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* 행정안전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예천군 노조 요청 사항 반영

- 격무 종사,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연 5일에서 5일로 변경하여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선거업무지원 특별휴가 신설 및 용어 정비(안 제21조제9항)

- 현행 : 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
- 개정 : 재해·재난·대규모 행사·비상근무·선거업무지원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

나. 격무 종사,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변경

(안 제21조제9항)

- 현행 : 연 5일 이내
- 개정 : 5일 이내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4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 jy190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 : 054-650-68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9항 전단 중 “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”을 “재해·재난·대규모 행사·비상근무·선거업무지원 등으로”로, “연 5일”을 “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⑧ (생략)	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군수는 공무원이 <u>재해·재난·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·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</u>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<u>연 5일</u>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	⑨ ----- <u>재해·재난·대규모 행사·비상근무·선거업무지원 등으로</u> ----- ----- ----- <u>5일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
⑩ 삭제	
⑪ ~ ⑭ (생략)	⑪ ~ ⑭ (현행과 같음)

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